

<p>과장을 교체하여 업무상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상 합리적인 개정으로 보여지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 제2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분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를 붙여 5년 이내 납부하도록 한 것은, 1993.10.28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여신금리를 자유여수신금리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금융기관 여수신 자율화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제26조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 일반연체이자율도 한국은행의 자유여수신금리 변경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은 역시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됨.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에”로 한다. 제26조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구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이상 檢計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教育監이 提出한 서울특별시教育監 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p>	<p>5.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30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改正理由를 말씀드리면 南部教育廳 管内 永登浦地域의 계속적인 學生數 減少와 同地域 住民들의 高校新設 要請에 의하여 永登浦區 楊坪洞 所在 한강여자중학교를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로 改編하기 위하여 한강여자중학</p>